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5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3월 1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3월 25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재정국장 한만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법률 제17893호, '21.1.12.개정, '22.1.13.시행)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·개정 및 폐지 의견 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 및 예고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- 자치법규 입법예고 대상 조문 정비(안 제6조)
-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 추가(안 제9조)
- 주민의 규칙 제정·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규정 신설(안 제24조)
- 의견제출의 방법과 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통보 절차 등

(안 제25조부터 안 제28조)

바. 그 밖에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수

나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·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 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 및 예고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
-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 「지방자치법」 인용조문을 법 개정내용에 맞춰 제19조에서 제20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 생략 사유를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맞춰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 안 제9조에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, 안 제24조에서부터 제28조까지는 주민의 규칙 제정·개정 및 폐지 의견제출·방법 절차, 의견반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법제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